

'90 회계년도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

김 동 일 <위험관리부 과장>

본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1990 회계년도(90. 4. 1~91. 3. 31) 중에 실시한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1항의 「특수건물」에는 협회 안전점검 업무의 주 대상인 특수건물의 일반현황 분석결과를, 2항의 「방재시설」에는 연소방지시설 등 주요 방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소화설비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수록하였다.

특수건물이라 함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에 소재하는 4층이상의 건물과 국유 건물, 사설강습소, 병원, 호텔, 공연장, 촬영소, 유흥음식점, 학교, 공장, 시장, 옥내판매장,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가 크다고 예상되어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의 의무 등을 법률로 정한 건물을 말한다.

1. 특수건물

가. 작년 한해동안 8천6백49건 증가

'90 회계년도말 현재 특수건물은 전년도 4만5천5백89건보다 8천6백49건이 증가한 5만4천2백38건으로 집계되었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80

<표1> 연도별 특수건물 현황

구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평균
특수건물수	15,210	17,024	18,411	20,393	23,214	26,061	28,444	31,839	37,677	45,589	54,238	-
증가건수	-	1,814	1,387	1,982	2,821	2,847	2,383	3,395	5,838	7,912	8,649	3,903
증가율(%)	-	11.9	8.1	10.8	13.8	12.3	9.1	11.9	18.3	21.0	19.0	13.6

<표2> 지역별 특수건물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계
'89 물건수	27,744	9,455	4,295	3,202	1,776	1,476	641	45,589
'90 물건수	30,087	10,955	4,875	3,817	2,107	1,694	703	54,238
증가건수	5,343	1,500	580	615	331	218	62	8,649
증가율(%)	21.6	15.9	13.5	19.2	18.6	14.8	9.7	19.0
물건수 구성비(%)	55.5	20.2	9.0	7.0	3.9	3.1	1.3	100

<표3> 특수건물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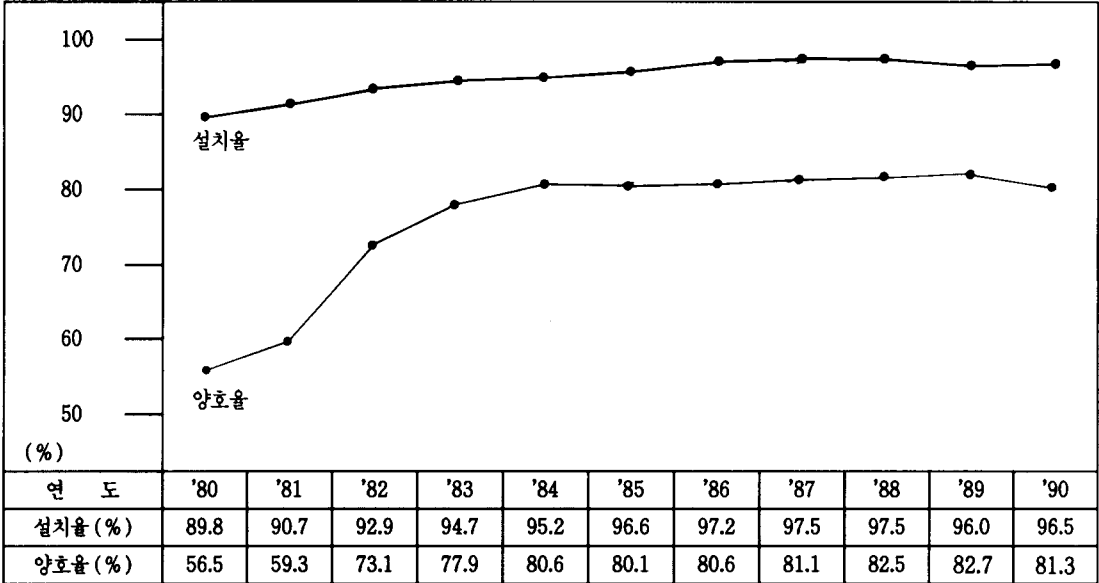
구분	물건수		구성비(%)		증가율(%)
	'89	'90	'89	'90	
국유	725	741	1.6	1.4	2.2
사설강습소	134	137	0.3	0.3	2.2
병원	282	295	0.6	0.5	4.6
4층이상	32,410	40,706	71.1	75.1	25.6
호텔	255	277	0.6	0.5	8.6
공연장	136	127	0.3	0.2	△ 6.6
촬영소	19	19	0.1	0.1	0
유흥음식점	105	99	0.3	0.2	△ 5.7
학교	483	475	1.1	0.9	△ 1.7
공장	5,074	5,167	11.1	9.5	1.8
시장	771	779	1.7	1.4	1.0
옥내판매장	236	241	0.5	0.4	2.1
공동주택	4,972	5,175	10.9	9.5	4.1
계	45,589	54,238	100	100	19.0

년도부터 지난 해까지의 특수건물 연평균 증가건수는 3천9백3건인데 비하여 '89년도에는 7천9백12건, '90년도에는 8천6백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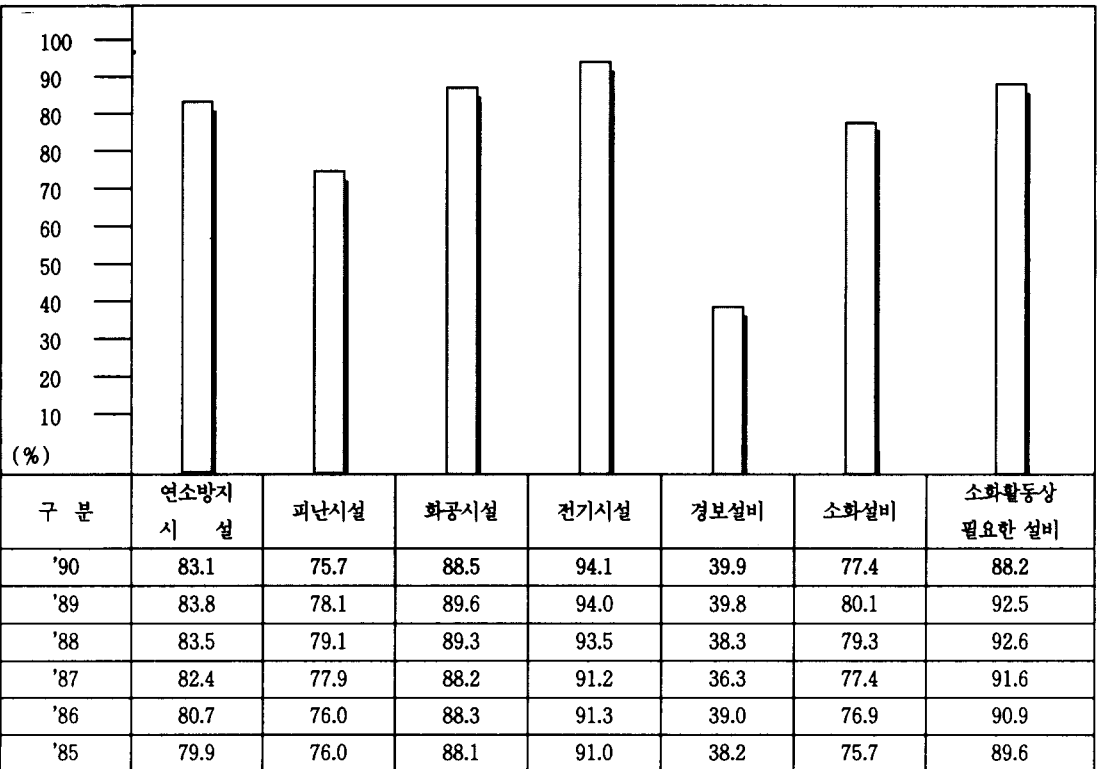
등 최근들어 신규물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나. 서울이 업무량 전체의 56% 점검1, 2, 3부가 업무를 분담

〈표 4〉 방재시설의 설치 및 양호율



〈표 5〉 시설별 양호율 비교



하고 있는 서울의 특수건물수는 3만87건으로서 전체물건수 5만4천2백38건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물건의 증가율 또한 21.6%로서 서울이 가장 높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다음으로 인천과 광주의 물건 증가율이 각각 19.2%, 18.6%로 높게 나타났다.

다. 4층이상의 건물이 75% 차지

4층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반건물(주로 사무실 또는 복합용도 건물)은 4만7천6백10건으로서 지난해 3만2천4백10건 보다 8천2백96건(25.6%)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특수건물의 75.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공장이 5천1백75건, 5천1백67

건(구성비 각 9.5%)으로 집계되었다.

<표 3>과 같이 4층이상의 건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별 물건수가 증가한 반면 공연장, 유흥음식점, 학교건물은 각각 9건, 6건, 8건씩 감소하였다.

2. 방재시설

가. 양호율은 81.3%

방재시설은 분석의 편의상 7개 항목 즉, 연소방지시설, 피난시설, 화공시설(화기사용시설, 가연성가스시설, 위험물시설 등), 전기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분류하였다.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모든 방재시설의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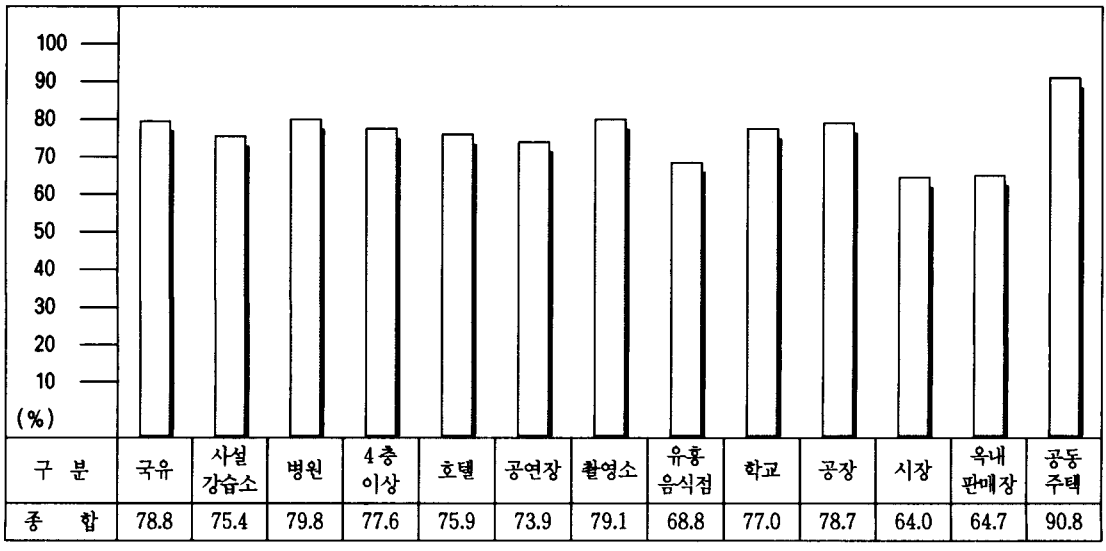
은 96.5%로서 전년대비 0.5% 높아졌고 양호율(양호건물수÷설치대상수×100)은 81.3%로서 전년도 82.7%에 비하여 1.4% 낮아졌으나 이는 관계법의 강화 등에 의한것으로, 양호율은 대체적으로 보아 전년도와 유사한 편이다. (<표 4> 참조)

나. 경보설비가 가장 불량

7개 항목으로 분류된 방재시설 중 전기시설과 화공시설의 양호율이 94.1%, 88.5%로 높은 반면 화재의 조기발견과 경보를 위한 경보설비의 양호율은 39.9%로서 기타설비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참조)

방재시설의 설치상태를 건물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한정된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가장 양

<표 6> 특수건물 용도별 방재시설 양호율 비교



〈표 7〉 소화설비 합인실적

구 분	특수건물		비특수건물		합 계		
	합인건수	합인동수	합인건수	합인동수	합인건수	합인동수	
전 수	'90	1,062	1,535	265	505	1,327	2,040
	'89	1,043	1,302	156	268	1,199	1,570

〈표 8〉 소화설비별 합인건수

구 분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기타	계
합인건수	1,224	621	86	46	63	2,040
구성비	60.0%	30.4%	4.2%	2.3%	3.1%	100%

호(양호율 90.8%)한 반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장, 옥내 판매장, 유흥장의 양호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6〉 참조)

다. 소화설비 합인

'90회계년도 중 본 협회가 실시한 소화설비 합인검사에 합격하여

보험요율의 할인을 받은 건물은 특수건물이 1천62건, 비특수건물이 2백65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특수건물의 경우, 점검건수 5만4천2백56건에대한 합인실적비율은 2.0%이며, 비특수건물은 요청건수(합인검사실시 건수) 3



백48건 대비 합인실적비율 76.1%로 집계되었다. (〈표 7〉 참조)

설비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수동화재경보설비 기능 포함)가 가장 많았으며, 옥내소화전설비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1975년도부터 화협이 안전점검 결과분석을 시작한 이후 전체 방재시설의 양호율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계된 것은 1979년도로서, 이때의 양호율은 49.8%였다. 11년이 지난 1990회계년도의 방재시설 양호율은 81.3%이므로 그동안 무려 31.5%의 방재시설이 개선된 셈이다. 초창기 우리의 소방 여건이 열악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화협의 안전점검업무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평가하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업무분야는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이상의 종합적인 측면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안전점검 업무가 국가 방재(소방) 업무의 밑거름이 되었다 듯이 이제 화협은 선진 각국의 기술 및 자료를 연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명실상부한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편집자주 : 본고 및 "90년도 특수건물 화재 통계"는 전년도 통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화보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42면 참조) 통계 대상도 변경될 것임